KOSHA GUIDE C - 06 - 2015

타일(Tile)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
2015. 11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 건설업팀 정안태

○ 개정자 :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정성춘

- 제·개정 경과
- 2011년 6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12년 7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2015년 11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KOSHA GUIDE C-08-2015 (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)
- KOSHA GUIDE M-88-2011 (지게차의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지침)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12장 작업장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기계·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
- 산업보건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2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
-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9000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 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지침에 우선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5년 12월 7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타일(Tile)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
## 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1편 제12장 작업장, 제2편 제1장 기계·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, 제2편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, 제3편 제12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규정에 의거 타일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, 전도, 베임, 직업성 질병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일공사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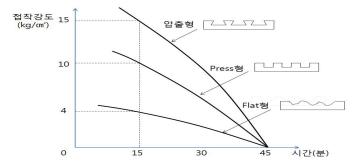
이 지침은 건설현장 구조체 내·외부의 바닥, 벽 및 천정 등의 타일공사에 적용 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타일공사(Tiling, Tile works)"란 각종 타일붙이기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.
  - (나) "타일(Tile)"이란 점토나 암석의 분말(또는 도토, 자토)을 성형 소성하여 만든 얇은 파형의 것을 말하고. 보통 타일은 도자기 타일을 말한다.
  - (다) "타일의 종류"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.
    - ① 원재료의 질(質)에 의한 분류
    - ⑦ 도기질
    - (J) 자기질
    - 때 반자기질 등

KOSHA GUIDE C - 06 - 2015

- ② 제(조)법에 의한 분류
  - ⑦ 습식타일
- (i) 건식타일
- 때 반건식타일
- ③ 용도상에 의한 분류
- ⑦ 외부용(벽체 보호상 흡수율이 적은 것)
- 나 내부용(벽, 바닥, 천정용)
- (라) "타일나누기"란 도면 또는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,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타일 부착 면에 나누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.
- (마) "타일 붙이기"란 현장 배합 모르타르, 기성 배합 모르타르 및 접착제 등 붙임 재료를 사용하여 바탕 면에 타일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.
- (바) "붙임시간(Open Time)"이란 접착 모르타르나 접착제를 바탕면 또는 타일 면에 발라 타일붙이기 하기에 적당한 상태가 되기까지의 최대 한계시간을 말한다.



〈그림1〉 붙임시간(Open Time)과 접착강도와의 관계

(사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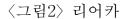
# 4. 타일공사 작업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

- (1) 타일공사 작업계획은 타일공사 작업장의 제반 여건과 설계도서(설계도면, 시 방서 등)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별 작업방법 및 절차에 부합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계획서는 타일공사 시 작업용 수공구, 기계공구 등 기계ㆍ기구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안전 · 보건상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후 구체적인 작업계획 을 수립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(3) 작업계획서에는 타일공사 시 근로자 안전보건 공통사항으로서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(용도외의 자재를 발판으로 사용금지 등) 확보계획 및 시행규칙에 서 정하는 안전표지(금지, 경고, 지시, 안내) 부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계획서는 적용할 타일부착 공법에 이해와 경험을 갖춘 자가 수립하여 야 하며 공사 중에는 작업책임자가 계획서의 내용에 의한 시공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기타 타일공사에 따른 품질 및 시공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.

## 5. 타일공사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

- 5.1 타일 등 자재 운반 작업
  - (1) 자재운반방법(수직, 수평)
    - (가) 인력을 이용한 자재운반
    - (나) 리어카, 핸드카 등 운반용구를 이용한 자재운반











〈그림3〉핸드카

(다) 지게차, 사다리차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한 운반



〈그림4〉지게차



〈그림5〉고소 사다리차

- (2) 운반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
- (가) 인력운반 작업
  - ① 타일자재 운반 작업 시에는 근골격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작업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② 운반 작업 전 근로자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③ 인력운반 시에는 자재 중량이 허리에 집중되지 않도록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짐을 들어올리며, 가급적 짐은 몸 가까이 붙여 들어 올리고 하중이 하체 쪽에 전달되도록 자세를 취해야 한다.



〈그림6〉나쁜 자세



〈그림7〉바른 자세

④ 인력운반 시에는 운반물이 타 물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전에 운반구간을 확인하고, 운반물이 전방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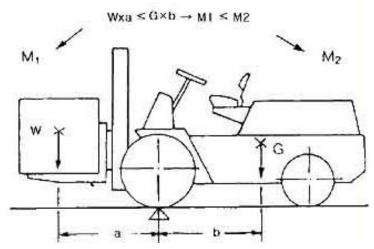
#### C - 06 - 2015

- ⑤ 인력운반 구간의 바닥면 등에 돌출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전도재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제거하고,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.
- ⑥ 자재를 인력운반 시에는 자재를 떨어뜨려 발 등에 재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운반하고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⑦ 타일박스를 들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손이 타일박스와 바닥면에 끼일 우려 가 높으므로 적정 받침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(나) 리어카 등 운반용구를 이용한 자재운반 작업
- ① 리어카, 핸드카 등 운반용구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 시에는 사전에 각륜, 볼트 체결 상태, 용접 상태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운반 경로 상에는 돌출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하고, 운반물은 운반 도중 이탈되지 않도록 로프 등을 이용하여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.
- ③ 리어카, 핸드카에는 자재의 과다 적재를 지양하고, 시야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엘리베이터, 리프트 등을 이용한 수직운반 시에는 개폐문의 턱이 없도록 조치하고, 회전을 고려한 적정 작업 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.

#### (다)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 작업

- ①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 시에는 지게차로 인한 충돌, 깔림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고,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지게차로 팔레트를 이용하여 타일을 운반 시에는 팔레트가 지게차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.
- ③ 지게차는 자격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.
- ④ 지게차 이용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지정하고, 신호수는 운 전원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신호하여야 한다.

- ⑤ 지게차는 급출발, 급정지 및 급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.
- ⑥ 허용하중 및 운행상황을 고려한 그 밖의 능력을 초과하여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⑦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좌석 안전 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, 착용지시를 받은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.



여기서, W : 포크중심에서의 화물의 중량(kg)

G : 지게차 중심에서의 지게차중량

a : 앞바퀴에서 화물 중심까지의 거리(cm)

b : 앞바퀴에서 지게차 중심까지의 최단거리(cm)

M1 : W×a ----화물의 모멘트 M2 : G×b ---- 차의 모멘트

〈그림8〉 지게차의 안정조건

## 5.2 붙임재료 배합작업

- (1) 붙임재료
- (가) 현장 배합 모르타르
- (나) 기성 배합 모르타르
- (다) 접착제

C - 06 - 2015

- (라) 충전재
- (마) 신축 줄눈재
- (2) 붙임재료 배합방법
- (가) 습식방법
  - ① 삽 등을 이용한 인력 배합
  - ② 이동식믹서(회전날)를 이용한 인력 배합
  - ③ 고정식 믹서를 이용한 기계 배합
- (나) 건식방법

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, 바닥타일 등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 착제를 이용한 방법

- ※ 접착제는 냄새 등으로 환기가 되지 않을 시는 근로자 및 거주민에게 유해할 수 있으므로 접착제 선정 시 안전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(3) 붙임재료 배합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
- (가) 공통 일반 수칙
  - ① 시멘트 포대를 뜯어 사용할 경우에는 시멘트가 날리지 않도록 천천히 작업을 실시하고,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.
  - ② 인력 배합작업 시에는 적정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고 삽질 때마다 가능한 허리를 펴도록 한다.
  - ③ 근로자는 코팅장갑이나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시멘트가 직접적으로 손 등에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.
  - ④ 작업자는 정해진 동선으로 보행토록하고,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.
  - ⑤ 붙임재료 배합작업 시 사용하는 배합 용기는 정해진 용도의 것을 사용하고, 화재· 폭발 우려가 있는 페드럼통 등을 가스 절단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- (나) 삽 등을 이용한 인력 배합작업

- ① 삽 또는 흙손 등을 사용하여 붙임재료(배합모르타르 등)를 배합하는 경우에는 요통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운동을 실시한다.
- ② 근로자 체력에 맞는 배합량을 조절하고, 허리에 힘을 주어 삽질하지 않도록 작업 전 주지시킨다.
- (다) 이동식 믹서(회전날)를 이용한 배합작업
  - ① 이동식 믹서 사용 작업 시에는 안전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회전날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회전 날에 접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.
  - ② 회전날을 이용한 배합 시에는 모르타르 등이 비산하지 않도록 작업구간 주변에 보호울을 설치한다.
- ③ 이동식 믹서를 이용한 배합작업 시에는 이동식 믹서의 절연여부, 회전날의 고정상태 및 이동전선의 배선상태 등 이상 유무를 작업 전 확인한다.
- ④ 이동식 믹서의 전선을 연결 또는 제거 시에는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한다.
- (라) 고정식 믹서를 이용한 기계 배합
- ① 고정식 믹서의 분전반은 단독으로 설치하고,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충전부 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.
- ② 가설전선은 바닥에서 띄워서 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부득이 바닥으로 배선하는 경우에는 절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덮개를 설치한다.
- ③ 고정식 믹서의 모터 등은 절연상태, 동력전달부 의 방호덮개 설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5.3 바탕처리 작업(바탕면 미장 및 타일나누기 작업 등)

C - 06 - 2015

- (1) 바탕 만들기 등 작업
- (가) 모르타르 바탕
- (나)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, 콘크리트 블록면, 경량기포 콘크리트면, 시멘트 압출 성형판 등을 바탕으로 사용
- (다) 바탕처리(물 축이기 및 청소)
- (라) 타일나누기
- (2) 바탕처리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
- (가) 작업 중 물고임에 의한 미끄럼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 기울기를 유지한다.
- (나) 타일나누기 작업 및 수직·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실의 고정 못은 실의 장력에 의해 빠지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고, 작업자는 보 안경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다) 규준타일 붙이기 작업 시 시멘트의 수축량 크기 증가로 타일이 떨어져 하부 근로자를 타격할 우려가 높으므로 시멘트 뿌리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라) 벽체 타일 바탕 만들기 및 타일나누기 작업 시에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여건과 진행공종에 부합하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공간 을 확보하여야 한다.

## 5.4 타일가공 작업

- (1) 타일가공 공구
- (가) 집게
- (나) 타일컷터
- (다) 핸드그라인더
- (라) 핸드드릴 등



## (2) 타일가공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

- (가) 타일가공 작업 중 주변의 잔여자재 등은 즉시 치우는 등 청소를 실시한다.
- (나) 다량의 자재를 절단하는 가공작업 시에는 가공공구를 바닥면에 설치하여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을 지양하고, 별도의 작업대에 가공공구를 설치하도록 한다.
- (다) 절단기로 타일을 절단 시에는 절단면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손은 가능한 멀리 잡도록 절단자세를 취한다.
- (라) 절단기로 타일을 절단 시에는 자재가 절단 중 움직이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설치하고, 1회에 한 장씩 차례차례 절단하도록 한다.
- (마) 타일가공은 별도의 작업대에서 하고, 말비계, 틀비계, 강관비계 등 상부 의 작업발판에서 가공하는 것을 지양한다.
- (바) 핸드그라인더 등 연삭숫돌은 회전부위에 방호덮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- (사)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에 결함유무를 확인하고, 제조사에서 정한 최고 사용 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아) 타일가공 작업 시에는 타일조각의 비산으로 인한 눈 등 신체부위의 부상 방지를 위하여 보안경 등 당해 작업에 부합하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자) 타일가공 작업 시에는 핸드그라인더 등으로 인해 발생된 분진이 확산되지 않 도록 집진설비를 설치하거나 외부로 배출되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5.5 타일줄눈 및 타일붙이기 작업

- (1) 타일 붙임공법의 분류
  - (가) 떠붙임공법, 개량 떠붙임공법
  - (나) 압착붙임공법, 개량 압착붙임공법, 유닛 타일 압착공법
  - (다) 접착붙임공법
  - (라) 판형붙임공법(타일거푸집 선부착 공법)
- (마) 동시 줄눈공법
- (2) 타일줄눈 및 타일붙이기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
- (가) 타일줄는 및 타일붙이기 작업 시에는 타일이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일의 적정한 바탕면 처리 및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부합하는 붙임재료를 선택하여 타일붙이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(나) 작업구간에는 작업자의 작업동선을 고려하여 돌출물 등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, 작업장 및 통로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타일 잔여자재 등에 대하여 작업 전 청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다) 타일 붙이기 작업 시에는 타일의 뒷발모양에 따른 붙임시간(Open Time)을 준수하여 적정한 접착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라) 타일줄눈 및 타일붙이기 작업 시에는 작업여건에 부합하는 안전한 구조 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, 페인트통, 박스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.
- (마) 작업발판의 틈은 3cm 이내로 하고, 작업발판의 단부에는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바) 타일붙이기 작업구간에는 작업발판으로 통하는 안전한 구조의 가설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사) 타일붙이기 작업 시에는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아) 타일붙이기 작업 시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상태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.

- (자) 한 번에 넓은 범위의 줄는 넣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허리, 손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전도, 추락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작업 범위를 설정하고 무리한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차) 외부 비계 상에서의 타일 붙이기 작업 시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카) 건물내부 공간에서의 타일붙이기 작업 시에는 적정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타) 타일시공 시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.
- (파) 천장타일 붙이기 작업 시 작업높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.
- (하) 천장타일 붙이기 작업 시 습식, 건식 등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붙인 타일 이 탈락되지 않도록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## 5.6 타일 보양 및 청소 작업

- (1) 타일 보양의 종류
  - (가) 직사광선 또는 풍우 : 시트 등 보양
  - (나) 한중공사 시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 : 난방 보온 등 보양
  - (다) 타일 붙인 후 3일 : 진동 및 보행 금지
  - (라) 줄눈 넣은 후 경화 불량 또는 24시간 이내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: 폴리에틸렌 필름 차단 보양 등

#### (2) 청소작업

- (가)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, 모르타르, 시멘트풀 등 제거 : 손,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깨끗이 씻은 후 마른 헝겊으로 닦아냄
- (나)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 : 물로 산 성분 완전히 제거
- (다) 타일 부착 접착제 :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
- (라) 그라우팅: 타일 전체 청소 등

- (3) 타일 보양 및 청소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
  - (가) 타일의 보양 및 청소작업 시에는 당해 작업에 부합하는 안전모, 보안경, 안전화,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적정 지급 및 착용한 상태로 작업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.
- (나) 타일의 보양 및 청소작업 시에는 타일의 탈락으로 인한 낙하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타일의 종류, 뒷발모양 등에 따른 접착 강도를 확보한 후 수행 하도록 한다.
- (다) 바닥타일 보양작업 시에는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행판 등을 깔고 보행하여야 한다.
- (라) 직사광선 및 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트 및 폴리에틸렌 필름 설치 작업은 날리지 않도록 별도의 지지로프를 설치하고, 추락 등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작업구간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마) 공업용 염산, 타일 접착제 등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해 물질의 유해·위험성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하여 작업 전 반드시 숙지 시켜야 한다.
- (바) 청소작업에 사용되는 공업용 염산 등 세척제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기준에 의거하여 당해 물질의 유해성 및 사용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게시토록 한다.

## 6. 타일철거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

- 6.1 기구 및 기계
  - (1) 수동
  - (가) 망치, 해머
  - (나) 드라이버, 정, 노루발 등

C - 06 - 2015

## (2) 전동

- (가) 전동해머드릴
- (나) 그라인더 등

#### 6.2 타일 철거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

#### (1) 준비작업

- (가) 자재 등 운반 시에는 작업수행 전 근로자 동선을 확보하고 운반통행로 주변에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한다.
- (나) 작업장 바닥은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작업 전 청소하는 등 정리 정돈을 실시한다.
- (다) 철거작업에 사용되는 수동 및 전동기계·기구에 대하여는 반입 전에 이상 유무 점검을 실시한다.

## (2) 타일 철거작업

- (가) 철거작업 계획수립 시 철거 부위의 구조, 타일의 부착상태, 상·하 동시 작업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.
- (나) 작업책임자는 조사결과에 따른 철거방법, 철거물의 처분계획, 철거작업용 기계·기구 등이 포함된 철거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(다) 철거작업 시에는 작업높이에 따른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, 발판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, 발판까지의 통행을 위하여 승강설비를 설치한다.
- (라) 바닥타일을 전동해머드릴로 철거할 경우에는 드릴이 바닥면에서 미끄러지거나 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적정 힘으로 드릴을 잡아야 한다.
- (마) 전동해머드릴 등 중량의 전동 공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통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작업 전 준비 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바) 벽체타일을 철거할 경우에는 타일의 탈락으로 인한 낙하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KOSHA GUIDE C - 06 - 2015

- (사) 작업장소 주변에는 돌출물, 절연파괴 전선 및 타일의 깨진 부위 등 유해·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.
- (아)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안경, 안전모, 안전화, 안전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, 당해 작업에 부합하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.

# (3) 청소작업

- (가) 타일, 콘크리트, 유리 등을 동시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하여 처분하여야 한다.
- (나) 철거 자재를 마대에 담아서 처분할 경우에는 깨진 타일 등이 튀어나오지 않 도록 마대를 선택하여야 한다.
- (다) 철거 자재를 운반·청소하는 근로자는 깨진 타일 등에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.